**양도양수계약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_(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와 \_\_\_\_\_\_\_\_\_\_\_\_\_\_\_\_\_\_\_\_\_\_\_\_\_(이하 “양수인”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pg계약관련 사업 일부에 관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PG(Payment Gateway)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결제대행서비스로, PG사 혹은 PG사와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가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총 거래금액의 일정비율을 PG수수료 수입으로 얻는 사업을 뜻하며 본 계약에서 PG사업이라 함은 “양도인”이 영위한 PG사업 및 그와 관련한 일부 채권의 부대업무를 뜻한다.

제 2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양도인”이 영위하던 PG사업 일부를 “양수인”에게 양도하여 사업을 유지하고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소정의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 조 (계약의 목적대상물 및 양수도 범위)

본 계약에서 양도 양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1. “양도인”의 ㈜코페이 pg사와 계약되어 있는 채권 중 아래의 채권 전부를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1. 양도대상 VID :

2. 양도대상 MID :

1. 본 계약에 따라 “양수인”은 “양도인”이 보험계약자로 <주식회사 코페이 영업협력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보증>에 관한 보증보험을 이관 혹은 신규로 발급 받아야 하며, 보증보험 발급일로부터 위 1항의 사업권이 “양수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단, 보증보험 변경입보전에 발생하는 모든 민원과 리스크는 “양도인”의 보증보험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제 4조 (양도양수 대금)

당사자 쌍방은 본 계약서의 작성일 현재 채권채무를 상계처리한 후 계약서 작성일 현재 양도양수의 목적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양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양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한다.

제 5조 (민원처리 의무부담)

본 계약에 의한 PG사업 양수도 이후에 “양도인”이 PG사업을 영위한 기간 중 내용을 대상으로 민원 기타 PG사업 업무 발생에 대하여 “양수인”의 요청이 있을 시 “양도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양수인”이 해당업무를 처리한다.

제 6조 (관할법원)

본 계약의 분쟁에 대한 관할법원은 “양도인”의 관할지방법원으로 한다.

제 7조 (특약)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겅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인감 날인 후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 년 월 일

“양도인” “양수인”

주소 : 주소 :

사업자번호 : 사업자번호 :

상호 : 상호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